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61 발의연월일: 2024. 11. 21.

발 의 자: 권영진·조승환·주진우

윤한홍 · 엄태영 · 조경태

이만희 · 정성국 · 박정하

조지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,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,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.

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,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법률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1항제3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76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"2일"을 "15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적용례)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	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		
개정법률	개정법률		
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 제75조	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		
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			
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			
대하여 「근로기준법」의 통상			
임금(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			
으로 산정한다)에 해당하는 금			
액을 지급한다.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	3		
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			
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			
기간 중 최초 <u>2일</u> . 다만, 피보	<u>15일</u>		
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			
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			
다.	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